

## 제5장

## 소득산정 및 재직(사업영위) 확인

### 1 소득의 종류

- “증빙소득”은 소득금액이 객관적인 자료(소득금액증명원 등)로 입증되는 모든 소득(근로·사업·연금·기타소득)을 합산한 종합소득
- “인정소득”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활용해 추정한 소득
- 증빙소득의 입증을 원칙으로 하나, 소득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\*에 한하여 인정소득으로 연소득 산정 허용

※ 소득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의 상세내용은 「제5장 5. 인정소득에 따른 연소득 산정 및 입증방법」 참조

### 2 증빙소득의 연소득 산정방법

- 채무자와 배우자의 2개년 증빙소득을 확인
  - 연간소득은 ‘연도별 과세전 연소득’, ‘1년간 연소득’으로 산정(1년 미만 소득은 연환산\*)
    - \*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연금소득에 한하며, 일할하여 계산  
(연간일수는 365일로 하되 윤년의 경우 366일로 적용하며, 초일산입 및 소수점 이하 절사)
- 2개년 소득의 차이\*가 20% 이하인 경우에는 최근년도 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하고, 소득의 차이가 2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‘2개년 평균소득’으로 산정
  - 다만, 증감한 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(이하, 상시소득)인 경우에는 ‘2개년 평균소득’으로 산정하지 않음

※ 산식 :  $|(\text{최근년도 소득} - \text{최근년도의 전년도 소득}) / \text{최근년도 소득}| \times 100\% > 20\%$

※ 2개년 소득확인이 가능한 경우의 연소득 산정방법 예시

▶ 채무자가 입증한 서류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심사

‘15.1월	‘15.9월	‘16.1월	‘16.9월	‘17.1월	‘17.8월
방법 1) (소득산정) ‘16년 과세전 연소득 + (확인) ‘15년도 과세전 연소득 :					
‘16.1월~12월(12개월) 소득 + ‘15.1월~12월(12개월) 소득					
방법 2) (소득산정) 최근 1년간 연소득 + (확인) 최근 1개년 소득의 전년도 1개년 연소득 :					
‘16.9월~‘17.8월(12개월) 소득 + ‘15.9월~‘16.8월(12개월) 소득					
방법 3) (소득산정) ‘17년 과세전 연소득 + (확인) ‘16년 과세전 연소득 :					
‘17.1월~‘17.8월(8개월) 소득 연환산(사업소득은 선택) + ‘16.1월~12월(12개월) 소득					

※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의 판단

- 근로소득인 경우(휴·복직자)에는 상시소득으로 간주하되,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
- 사업소득자 등은 채무자가 상시소득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통해, 발생 시점부터 1년 이상 지속됨이 증빙되면 상시소득임을 포괄적으로 인정
- 근로소득자 외에도 보험설계사, 시간강사, 기타 사업자 등도 위의 사유가 입증되면 상시소득으로 인정 가능

※ 상시소득 입증 예시

- 근로소득 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·재직증명서 등
- 사업소득 :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(자가건물은 등기부등본), 고용계약서 등
- 연금소득 : 연금증서·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지속적인 연금지급 입증 서류
- 기타소득 : 고용계약서 등 (원칙적으로는 상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으나, 근로소득과 유사한 성격의 기타소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함)

■ 채무자의 소득발생기간이 1년 초과~2년 미만인 경우 1년 미만 소득을 연환산하여 비교

■ 채무자가 1년 이하의 소득만 있어 2개년 소득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, 동 1년 이하의 소득을 연환산 후 10% 차감하여 소득 산정

- 다만, 상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 차감 미적용

■ 실수요자 소득요건 판단 시, 2개년 평균소득·10% 차감소득을 적용하는 경우 이를 적용한 소득으로 판단

■ 소득발생기간이 현재 유지중인 소득원을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하고, 12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반드시 연환산\*

※ 단, 사업소득은 계절효과로 인해 연환산이 도리어 소득액을 왜곡할 수 있어 연환산 여부를 선택 가능

- 연환산 시에는 재직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소득입증서류상의 소득발생기간이 1개월 이상 ~ 1년 미만임을 채무자가 입증해야 함.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로도 연환산 가능

- 소득발생기간(재직기간)은 1개월 이상이나 입증서류상의 수령액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 일할 계산하여 연환산 가능

- 채무자가 2개 이상의 소득원을 유지중인 경우에는 소득별로 연환산하여 합산

- 일용근로소득은 세무서발급 소득금액증명원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인정하되 객관적인 서류로 근로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 환산 가능

- 연금소득은 소득발생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하며, 수령증서 상의 연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평균 실수령액을 연환산한 금액
- 연금의 범위는 공적연금\*, 기업연금, 개인연금을 포함
  - ※ 군인연금,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원연금, 국민연금(노령연금, 장애연금, 유족연금 등) 등 공적기관이 지급하는 모든 종류의 연금소득(기초생활수급비, 국가유공자 보상금, 보훈급여 등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과 수당 등을 포함)
- 다만,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(구직급여·상병급여·연장급여·조기재취업수당·직업능력개발수당·광역구직활동비·이주비) 제외

〈소득원별 연간소득 산정방법 예시〉

소득원	서류명칭	연소득 산정방식
근로소득	<a href="#">소득금액증명원</a>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(ISA용)	1) 1년 소득확인 시 : 증명원상 소득금액 2) 1년 소득확인 불가 시 : 소득합계 ÷ 해당 근무일수 × 연간일수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	1) 1년 소득확인 시 : 영수증상 근무처별 소득명세의 현근무지 소득 계 2) 1년 소득확인 불가 시 : 소득합계 ÷ 해당 근무일수 × 연간일수
	급여명세표 등(임금대장,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)	1) 1년 소득확인 시 : 12개월 합계금액 2) 1년 소득확인 불가 시 : 월별합계금액 ÷ 해당근무일수 × 연간일수
사업소득	<a href="#">소득금액증명원</a>	증명원상 <a href="#">소득금액</a> (연환산 선택)
	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	영수증상 <a href="#">소득금액</a> (연환산 선택)
	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	영수증상 지급총액 × 60%(연환산 선택)
	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(세무사 확인분)	계산서상 종합소득금액(연환산 선택)
연금소득	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 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	1) 1년소득 확인 시 : 1년간 수령액 합계 2) 1년소득 확인 불가 시 : 수령액 합계 ÷ 수령기간일수 × 연간일수
기타소득	<a href="#">소득금액증명원</a>	증명원상 <a href="#">소득금액</a>

### 3 휴직 등 예외적인 경우의 증빙소득 산정방법

-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2개년 증빙소득을 확인한 후 휴직 전 최근년도 소득으로 산정\*
  - ※ 휴직자의 연소득 산정 기본원칙은 「제5장 2. 증빙소득의 산정방법」 참조
- 신청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내\*에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의 소득발생이 없는 경우에는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
  - ※ (예시) 2018년 2월 신청한 경우 2015년 2월~2018년 1월
- 신청일 현재 복직자는 복직 이후 최근년도 소득으로 산정
  - 복직 이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휴직자로 간주할 수 있음
- 신청일 현재 퇴직(또는 폐업)한 경우에는 퇴직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폐업증명서 등으로 소득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추정
- 해외소득의 산정은 소득 관련서류에 해외 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(외국 세무서 등)의 확인을 받거나, 아포스티유\*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소득금액증명원으로 간주
  - ※ 협약가입국 사이에서 영사확인 등의 공문서 인증절차를 폐지하고 공문서 발행국가가 동 문서를 인증하는 제도. 우리나라와 미, 영, 독 등 92개국에 가입
- 해외소득의 원화환산 등은 개별 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라 처리
-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없는 경우 별도의 소득입증이 없는 한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추정

### 4 증빙소득의 입증방법

- 근로·사업(부동산임대소득 포함)·연금·기타소득 등의 모든 종합소득 합산
  -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액과 다른 입증방법에 의한 소득액이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유의
 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필수 징구하여 소득 종류(근로, 사업소득)를 확인하되, 신청인이 소득 및 재직(또는 사업영위)서류를 별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심사

- 근로·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,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도 연소득 산정 가능. 다만, 근로소득의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 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 사용 불가
-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업종 및 업태는 동일하고 상호만 변경된 신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소득을 인정하며, 보험설계사 등이 제출한 최근년도 소득자료가 현 사업과 동일한 업종 및 업태인 경우에도 해당 소득을 인정
- 소득발생기간 충족 여부는 재직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증명

〈소득종류에 따른 입증서류〉

소득종류	소득입증방법
근로	1) 세무서(홈택스) 발급 소득금액증명원, 소득확인증명서(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: ISA) 2)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*(원천징수부 등 그 실질이 원천징수를 증명하는 서류) ※ 원천징수영수증 상 비과세소득 제외 3)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(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, 임금대장 등)
사업	1) 세무서(홈택스) 발급 소득금액증명원, 소득확인증명서(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: ISA) 2)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(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포함) ※ ①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적용소득률이 고려된 사업소득금액을 그대로 적용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적용소득률 60%를 적용한 환산소득액을 연소득으로 간주. 즉, 환산소득액 = 지급총액 × 60% 3)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
연금	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-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는 연금수령통장 사본 추가 - 배우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연금도 인정 가능. 통장분실 등으로 입금 통장 사본 징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 거래내역서로 확인
기타	세무서(홈택스) 발급 소득금액증명원

## 5 인정소득에 따른 연소득 산정 및 입증방법

- 소득 증명이 어려운 경우\* 다음의 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득추정 가능

- ※ ① 국세청의 '사실증명원' ([www.hometax.go.kr](http://www.hometax.go.kr)→신청/제출→신청업무→사실증명신청) 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
- ② 연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(폐업 포함)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
- ③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사업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
- ④ 부부합산 소득이 24백만원 이하인 경우

### <소득추정에 따른 입증방법>

소득추정 종류		입증서류
[1]	국민연금	공단 발급 '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'
[2]	건강보험료	공단 발급 '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' 공단 발급 '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'* ※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지역가입자의 경우, 원칙적으로 지역세대주인 경우만 인정

※ 신청일 현재 연금·보험료 미납이 확인되는 경우 추정소득 이용 불가(다만, 승인일 현재 미납이 정리된 경우 이용가능)

- 입증서류에 의해 인정소득을 추정하는 경우 연소득은 다음과 같이 추정

종류	연소득 추정 방법
[1] 국민연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연소득 =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÷ 보험료율<sup>주1)</sup> × 12월 × 95%</li> <li>주1) 연금보험료율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율에 따름</li> </ul>
[2] 건강보험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연소득 =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* ÷ 보험료율<sup>주2)</sup> × 12월 × 95%</li> <li>주2) 건강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에 1/2을 곱한 요율로 함</li> <li>※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'건강·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' 상의 건강보험료를 말하며, 종류(지역·직장 및 임의계속가입)가 다른 건강보험간 혼용불가</li> </ul>

- 입증서류 없이 소득을 추정하는 경우\* 연소득은 다음과 같이 추정

※ 고객 동의하에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경우

종류	연소득 추정 방법
[1] 국민연금	■ 연소득 = 기준 소득월액 최근 3개월 평균 × 12월 × 95%
[2] 건강보험료	■ 연소득 = 평균 보수월액 최근 3개월 평균 × 12월 × 95%

- 추정된 소득액(5% 차감 후 소득)이 상품별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 취급이 불가하고, 연소득 산정시에는 50백만원을 한도로 함

- 인정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시에는 다른 소득 또는 배우자 소득과 합산 불가

## 6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 확인

---

### 1) 재직사실 확인 방법
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. 다만, 건강보험 적용대상 제외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판단에 따라 재직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

### 2) 사업영위 확인 방법

- 사업자등록증과 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의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를 통하여 사업영위 사실 확인

### 3) 기타

- 일용근로<sup>※</sup> · 연금 · 이자 · 배당 ·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사실확인 생략 가능

※ 다만, 일용근로소득을 연환산하거나 상시소득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· 경력증명서 · 지급명세서 등으로 소득발생기간 및 현재 유지여부 확인

- 소득 추정시에는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생략
- 1)과 2)의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단계 판매원 등록증, 위촉증명서, 운송사업면허증, 고용계약서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같음